

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				간 사	위원장	결 재
일 시	2014.10.14(월) 15:00~16:00			회의장소	3층 상황실	
참석인원	재적	참석	불참			
	10	9	1			
안 건	◦ 제6대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					
심의결과	◦ 2차 회의시 결정					
사회자	<위촉장 수여, 구청장님 인사말씀, 회의 안내>					
사회자	◦ 회의에 앞서 위원장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◦ 위원장으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.					
○○○위원	◦ 위원중에 연장자분이 위원장으로 하시는 게 맞을거 같습니다.					
사회자	◦ 현재 우리 위원회의 최고 연장자는 ○○○ 위원님이십니다.					
○○○위원	◦ 저는 ○○○ 위원님을 추천합니다.					
○○○위원	◦ 저는 위원장을 하기에는 아직 연배가 되지 않습니다. ◦ 모두 심의위원으로 처음이신가요?					
사회자	◦ 전부 처음이시고 ○○○위원님은 예전에 울산광역시심의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.					
○○○위원	◦ 과거 회의를 진행해 보신 ○○○위원님이 위원장으로 하시는 게 어 떻겠습니까?					
○○○위원	◦ 저도 ○○○ 위원과 나이가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.					
○○○위원	◦ 나이 보다 경험을 가지신 분이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?					
사회자	◦ 그럼 ○○○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.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?					
	< 위원 전원 동의 >					
위원장	◦ 네....감사합니다....바로 회의진행하겠습니다. 이어서 기획홍보실장 님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.					
	< 회의 자료 설명 >					
위원장	◦ 수고하신 실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. ◦ 관련해서 질문 부탁드립니다.					
○○○위원	◦ 이달 말까지 결정되어야 하는 겁니까?					
기획홍보실장	◦ 네 법상으로 10월말까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					
○○○위원	◦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10페이지에는 2009, 2010년 공무원 보수가 동결이라고 되어있는데...1페이지에는 2009년부터 계속 동 결이라고 되어있네요?					
기획홍보실장	◦ 네 공무원 보수는 조금씩 인상이 되었지만 의원님은 2009년부터 계속 동결을 했습니다.					

○○○위원	◦ 그런데 복구가 다른 데 비해서 낮은 건 아니거든요. 계속 동결을 해왔다고 하지만 왜 이렇게 높은지 이해가 안갑니다.
기획홍보실장	◦ 4년전 심의회 할 때 이 금액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때부터 계속 동결되어 왔습니다.
○○○위원	◦ 동구와 북구의 재정자립도가 그리 썩 좋은 것도 아닌데 아무리 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하는게 좋은 지 잘 모르겠네요
위원장	◦ 동결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, 위원회에서 인상안을 결정했는데 조례개정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동결 선언을 한 것입니다. ◦ 참고로 10페이지 보시면 행안부에서 정한 기준액이 있구요 현재 지급되고 있는 지급액이 있습니다. 이 표를 보시면 북구는 행안부 기준액보다 사실 적게 주고 있습니다. 다른 구는 자기 여력보다 많이 주고 있습니다.
○○○위원	◦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북구가 왜 월정수당 기준액이 많은 것이죠?
위원장	◦ 이건 행안부에서 재정력지수나 인구수등을 이용하여 수식으로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. 프로그램으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◦ 이번에 의정비 심의가 바뀌어서 4년에 한번 하는 겁니까?
기획홍보실장	◦ 오늘 결정된 인상률을 4년 동안 적용합니다.
사회자	◦ 그래서 공무원보수인상률로 정할 경우 매년 보수인상률이 바뀌기 때문에 매년 그 바뀌 인상률이 적용되는 것입니다.
위원장	◦ 4년을 동물로 안정해도 되는 겁니까?
사회자	◦ 동물로 안정하셔도 됩니다. ◦ 1년차는 만약 3%로 하고 2년차 이상은 4%로 하겠다고 하면 별도의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.
위원장	◦ 4년에 걸친 인상률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? ◦ 그럼 여론조사는 안해도 된다는 겁니까?
사회자	◦ 보수인상률 이하로 결정될 때만 여론조사를 안해도 됩니다.
위원장	◦ 공무원 보수인상률로는 여론조사를 안해도 되고 그걸 넘어서면 해야 된다는 거죠?
○○○위원	◦ 월정수당을 결정하는 거죠? ◦ 올해 2,567만원에서 인상률이 적용되는 거고, 올해 인상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인상되는 거죠? ◦ 올해의 인상률은 1.7%고, 7년 평균이 2.2%로 되어 있는데 적용이 1.7%가 되는 겁니까? 평균인 2.2%가 적용되는 겁니까? ◦ 제가 궁금한 것은 여론조사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?
위원장	◦ 보수인상률이하로 할 경우 여론조사가 필요 없고 그 이상으로 할 때 여론조사가 필요한데 그 이상 기준금액이 어떻게 되는지?
기획홍보실장	◦ 이상은 기준이 없죠.

○○○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공무원보수인상률로 한다고 하면 여론조사가 필요 없는 것이고 그 외의 다른 방식 숫자를 정하게 되면 여론조사를 해야되는 거네요.</li> <li>◦ 1%가 늘어나더라도 여론조사가 필요한 거네요..</li> </ul>
사회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네, 맞습니다.</li> </ul>
○○○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여론조사를 안할려면 공무원보수인상률로 한다. 이 방법 밖에 없는 거네요</li> <li>◦ 그리고 10페이지에 보시면 2014년 기준액이 있고 제6대의원 기준액이 있는데 이걸 뭘까요?</li> </ul>
사회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2014년 현행지급액은 2012년말 기준 자료로 산출된 금액이고 제6대의원은 2013년말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.</li> </ul>
위원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다른 설명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이 있습니까?</li> </ul>
기획홍보실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일단은 월정수당을 정하게 되면 상한액을 넘지는 못합니다.</li> </ul>
위원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있는데요. 여기서는 월정수당을 정하는 것입니다.</li> <li>◦ 집행부에서는 별도의 안을 제출하지는 않았죠?</li> </ul>
사회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의회에서는 공무원 보수인상률로 인상해달라는 의견으로 제출되었습니다.</li> </ul>
○○○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공무원보수 1.7%로 했을 때 그해 올라간 금액이 그 다음에도 변동이 생기는 겁니까?</li> </ul>
사회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네, 6페이지를 보시면 1년차에 1.7% 인상하고 그 인상된 금액에서 인상률이 변동됩니다</li> </ul>
위원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안을 몇가지 만들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부담도 적지 않을까요?</li> <li>◦ 안을 만들어서 여론조사를 하고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.</li> <li>◦ 이런말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사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인상을 반대할 겁니다. 그리고 제일 적은 금액에 다수의 표가 나올 겁니다. 그래도 그 결과를 보고 위원님들이 다음회의에서 결정하는 게 나올 거 같습니다.</li> <li>◦ 일단 1안은 공무원 보수인상률로 하고, 기타 물가인상률 등 여러가지 안을 만들어 보시죠.</li> </ul>
○○○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여론조사는 어떻게 실시합니까? 조사대상은?</li> </ul>
사회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여론조사는 ARS방식과 CATI 방식이 있고 조사대상은 500명정도로 합니다.</li> </ul>
○○○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향후 공무원 보수인상률 추이가 나와 있는 건 없나요?</li> </ul>
사회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향후 보수인상률 추이는 별도로 없구요 6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7년 평균 2.2%정도 나와 있습니다.</li> </ul>
○○○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1페이지에 지금 다른 구군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울산은 아직 정해진 곳은 없네요.</li> </ul>

위원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오늘 바로 정할 이유는 없습니다.</li> <li>◦ 저는 유급제의 취지를 살릴려면 전문직이 이 금액을 가지고 의회에 진입하긴 어려울 꺼 아납니까? 의회에 전문직 종사자들을 끌어들이자는 취지에서 한 것인데 이 금액으로 들어오긴 힘들지 않습니까? 주민들의 정서가 이 취지에 맞지는 않은 거죠</li> <li>공무원보수인상률에 맞추는 건 너무 편의적으로 진행되는거 같기도 하네요.</li> </ul>
○○○위원	◦ 사실 기준잣대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밖에 없네요
위원장	◦ 다른 안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
○○○위원	◦ 소비자물가를 반영한 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
위원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퍼센트를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2010~2013 소비자물가의 평균 수치는 어떨습니까?</li> <li>◦ 2.6%정도 됩니다. 너무 높은데요...</li> <li>◦ 안을 일단 넣으시죠.</li> </ul>
○○○위원	◦ 물가인상률도 현재 경제사정이 안좋아서 내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안으로 적용하기에는 좀.
위원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그럼 일단 오늘 결정되지는 않을 꺼 같고 다음 2차 회의에서 결정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.</li> <li>◦ 우리가 먼저 결정을 하면 다른 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2차 회의에 추가 안을 가지고 오셔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?</li> </ul>
○○○위원	◦ 솔직히 북구의원님들이 다들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다음 회의 때 너무 다른 구 의식하지 말고 결정하도록 합시다.
위원장	◦ 가능하면 다음 회의때 안을 하나씩 다 내고,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.
	< 위원 전원 동의 >
사회자	◦ 여론조사를 하지 않으면 다음 회의 시에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이하로 하는 안으로 정하셔야 합니다.
위원장	◦ 그럼 2차 회의 날짜를 잡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
	◦ 2차 회의 : 10. 28.(화) 16:00